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3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3.

발 의 자:노종면・문금주・윤건영

박홍배 · 소병훈 · 서영석

이기헌 · 서미화 · 김영환

송기헌 · 김교흥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(구동축전지)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.

그런데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 기자동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구동축전지 정보 공개) ①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원산지, 제조사, 과전류 차단방식, 미발화 또는 미폭발 조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(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동축전지 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·판매자등이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3(구동축전지 정보 공개)
	① 자동차제작・판매자등은
	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
	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
	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원산
	지, 제조사, 과전류 차단 방식,
	미발화 또는 미폭발 조건 등
	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동
	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
	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
	통부령으로 정한다.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79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
	여 구동축전지 정보를 공개
	하지 아니한 자동차제작・판
	매자등(판매위탁을 받은 자

	는 제외한다)
<u>1의2.</u> · <u>1의3.</u> (생 략)	<u>1의3.·1의4.</u> (현행 제1호의2
	및 제1호의3과 같음)
2. ~ 19. (생 략)	2. ~ 19. (현행과 같음)